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934
----------	-------

발의연월일 : 2026. 10. 16.

발 의 자 : 신정훈 · 안호영 · 이용우
이인영 · 임미애 · 이건태
조계원 · 허 영 · 전진숙
양부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군사교육 기간이 끝나고 임용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교육 기간 또한 군인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이고, 병의 경우 훈련소에서의 군사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에 군사교육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교 · 준사관 · 부사관으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여 복무기간 계산의 형평성을 제

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후단 신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 전 「군인사법」 제11조의 3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군 또는 공익	② -----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은 임용되	-----
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	-----
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
때에는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
합산한다. <후단 신설>	-----. <u>이 경우 장교 · 준사</u>
	<u>관 · 부사관으로 임용 전 「군</u>
	<u>인사법」 제11조의3제2항 및</u>
	<u>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u>
	<u>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u>
	<u>포함하여 계산한다.</u>